

규정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가능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처럼 20인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여 25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동개정안은 타당함.

- 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(안 제11조의2), 동 안은 박물관 개설 준비를 위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구체적 분야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임기용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나, 현재 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조직간의 역할관계가 모호하며 굳이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전체회의 또는 문화위원회의 자율의결 사항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문화위원회와 소위원회간의 기능상 혼동이 예상되는 동 조항의 신설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
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26
----------	-----

2001년 9월 일
문화교육 위원회

1. 심사경과
 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8월 20일,
서울특별시장
 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 위원회 (2001.9.4) 상정·심의
제4차 문화교육위원회(2001. 9. 11)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임재오)

가. 제안이유
서울월드컵경기장 준공이 2001. 12월로 예정됨에 따라, 당해 시설의 설치근거, 사용료 및 위탁근거를 정하고, 이미 폐쇄된 체육시설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포함시키고, 체육공원조성 및 백범기념관건립에 따라 이미 폐쇄된 동대문씨름장과 효창운동장내 테니스장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함.
-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포함시키고, 동 경기장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부과 정수 근거 마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윤병국)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준공이 2001.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근거, 사용료 및 위탁근거를 정하고 이미 폐쇄된 체육시설을 삭제하려고 제안된 것임.
- 주된 내용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기준의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정하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, 경기장기본전용사용료를 잠실종합운동장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.
-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측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·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9조),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잠실야구장을 비롯하여 6개 시설을 위탁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또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국장, 시의원, 체육,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(동 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) 나름대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.
따라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위탁대상시설로 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또한 동시설의 수탁자는 시설관리를 위한 조직중원의 어려움과 전문적이고 기업적

<p>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의 선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고 있음(안 제16조제5항).</p> <p>○ 그러나,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, 동 기관이 시설관리를 위한 서울시가 설립한 전문적인 기관이긴 하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만큼 안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, 체육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기존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의 혼동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음.</p> <p>○ 따라서 조직증원의 문제나 전문적, 기업적 경영능력을 고려한 결정 등 현실적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○ 그 밖의 개정조항은 폐지되는 체육시설을 정리하거나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기본전용사용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,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증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925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1년 9월 일 문화교육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(2001.9.4) 상정·의결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</p> <p>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임재오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	의안	925	번호		<p>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· 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, 또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,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의 투명성 확보,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확대 등을 위하여 일부규정을 현실</p>
의안	925				
번호					